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6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김 윤 · 남인순 · 박정현

강훈식 • 박홍배 • 김선민

강경숙 · 강준현 · 이용우

문진석 · 장종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않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,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5조제5항).
- 나.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제3항).
- 다.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신설함(안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제3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

제18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현지 위생평가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은 제외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및 검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1조의2에 따라 연간 계획에 따라 계획수입이 승인된 수입식품등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2(계획수입 승인 등) ①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식품등을 연간 계획에 따라 수입(이하 "계획수입"이라 한다)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고,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으로 한다. 이 경우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종전 승인의 남은 유효기간으로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계획수입 승인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획수입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
 - 2. 계획수입 승인 기간 중에 사실과 다르게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
 - 3. 계획수입 승인받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나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

- 4. 제3항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- ⑤ 제4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간 계획수입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⑥ 계획수입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의 대상과 절차·방법, 실적 보고,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0호 중 "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조제5항·제6항"을 "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"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조제5항·제6항"을 "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획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계획수입의 승인은 제21조의2에 따른 계획수입의 승인으로 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5조(영업의 등록 등) ① ~ ④ 제15조(영업의 등록 등) ① ~ ④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⑤ 제29조제1항 또는 「식품 ⑤ 제3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 하는 자는 제29조 또는 「식품 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 등의 표시・광고에 관한 법 정지 처분<u>을 받은 영업자는 그</u> 률ㅣ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제3항에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 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 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 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 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 ⑥ ~ ⑧ (생 략) ⑥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8조(영업자 준수사항) ① (생 제18조(영업자 준수사항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 출국에 제조·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(이하 "주문자상표부 착수입식품등"이라 한다)을 수 입 · 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주	문자상	正부츠	 수입식	품등을
제출	と・가공	하는	업체에	대하
여	식품의	약품인	<u></u> 난전처장	이 정
하는	= 위생건	섬검에	관한	기준에
따근	가 해외스	심품 유	비생평가	기관으
로	하여금	현지	위생평	가 등
을	실시하	게	하여야	한다.
<단	서 신설	>		

2. (생 략)<신 설>

- 제21조(수입검사 등) ①·② (생 제략)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 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.
 - 1. ~ 3. (생 략)

1
<u>다만, 현지 위생평가의</u>
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총
리령으로 정하는 제2항에 따
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
은 제외할 수 있다.
2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
가 및 검사의 절차와 방법 등
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
<u>정한다.</u>
]21조(수입검사 등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

<신 설>

4. (생 략) ④·⑤ (생 략) <신 설>

- 4. 제21조의2에 따라 계획수입이 승인된 수입식품등
- 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계획수입 승인 등) ①
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식품등을 연간계획에 따라 수입(이하 "계획수입"이라 한다)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고,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수입 승인의 의 유효기간은 승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으로 한다. 이 경우 변경 승인의유효기간은 종전 승인의 남은유효기간으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계획수입 승인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계획수입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
- 2. 계획수입 승인 기간 중에 사 실과 다르게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
- 3. 계획수입 승인받은 수입식품
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현
 지실사나 제21조 또는 제25조
 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
 부적합인 경우
- 4. 제3항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 지 아니한 경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 나한 경우

- 제29조(등록취소 등)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 - 1. ~ 9. (생략)
 - 10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 조제5항・제6항,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 우
 - 11. ~ 13. (생략)
 - ② ~ ④ (생 략)
-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

<u>(5)</u>	제4항	에 [[다라_	승인] 0]	취:	<u> 소된</u>
<u>경</u>	우에는	ユ	취소	논가	있	<u> </u>	<u></u> 날부
터	3년간	계홍	힉수	입을	신:	청힐	수
<u>없</u>	<u>다.</u>						

⑥ 계획수입의 승인 및 변경 승 인의 대상과 절차 · 방법, 실적 보고,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9소(등독취소 등) ①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10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 조제6항ㆍ제7항,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 우
 - 11. ~ 13. (현행과 같음)
 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제33조(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 제33조(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)
 - (1) -

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제15조, 제18조와 「식품위생법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, 제12조의2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또는 제24조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조제5항・제6항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~ ⑥ (생 략)

생관리법」 제4조제6항ㆍ제7
<u>ŏ</u> }
② ~ ⑥ (현행과 같음)